

<p>長 提出)</p> <p>(16時 29分)</p> <p>○議長 金璫會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서울 特別市立藝術團體設置條例案을 上程합니다.</p> <p>(談事棒 3打)</p> <p>文化教育委員會 朴善童議員 나오셔서 審査結果를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朴善童議員 文化教育委員會所屬 朴善童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반갑습니다.</p> <p>1993年 2月 12日 서울特別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同年 2月 15日 回附된 서울特別市立藝術團體設置條例案에 대한 當 委員會의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p> <p>執行部의 規則에 근거를 두었던 市立藝術團體의 設置根據를 地方自治法에 따라 條例로 規定하려는 條例制定案으로써, 主要骨子を 말씀드리면 第1條의 目的에 地方文化·藝術團體의 育成과 公演藝術의 暢達을 위하여 設置한다고 明示하였고, 藝術團體가 8個였던 것을 劇團을 追加하여 9個로 하고, 各 藝術團體는 團長을 包含한 專屬團員을 두고, 團員은 公開銜에 의하여 市長이  위촉함을 原則으로 하였으며, 專屬團員의 報酬와 客員出演者의 出演料를 支給하는 規定을 두었고, 各 藝術團體에는 委員會를 둘 수 있도록 하고 市長의 權限中 劇團을 除外한 8個 團體에 대한 일부의 權限을 世宗文化會館長에게 委任하는 規定을 두었으며, 條例 施行에 必要한 事項은 規則으로 定하도록 한 것 등을 骨子로 하고 있습니다.</p> <p>當 委員會에서는 어떻게 하면 各 藝術團體들의 特性을 살려 獨창적인 發展을 기할 수 있는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第60回 臨時會 第1次 文化教育委員會와 第61回 臨時會 第1次 文化教育委員會에서 執行部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상세히 들은 후 質疑 答辯 討論過程을 거쳐  깊게 研究하였고 藝術團體의 專門家인 所屬團長들의 意見을 들어 폭넓고  깊은 審査를 하였습니다. 그 結果 執行部로부터 規則制定時에 團長들의 意見을 收斂하여 各 藝術團體의 特性을 살리면서 獨</p>	<p>창적인 發展을 기할 수 있도록 制度를 改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各 藝術團體에 委員會를 둘 수 있게 規定하면  필요 이상인 9 個의 委員會까지 둘 수 있게 되므로 必要에 따라 1個 내지 2個 委員會만 둘 수 있도록 “각”자를 削除하고 다른 부분은 原案대로 可決하는 것을 內容으로 하는 修正案을 滿場 一致로 可決하여 當 委員會가 修正案을 提案 하게 되었습니다.</p> <p>同僚議員 여러분, 자세한 內容은 書面報告로 갈음하면서 報告를 마치고자 합니다. 當 委員會가 2회에 걸친 會議과 여러 차례의 懇談會를 開催하면서 深度있게 審査하여 提案하는 修正案대로 可決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p> <p>○議長 金璫會 그러면 文化教育委員會에서 審査修正한 서울特別市立藝術團體設置條例案에 대해서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p> <p>(「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p> <p>그러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p> <p>(談事棒 3打)</p> <p>.....</p> <p>(參 照)</p> <p>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안</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 특별시에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종류) 예술단체에는 교향악단·합창단·소년소녀교향악단·소년소녀합창단·국악관현악단·가무단·무용단·오페라단 및 극단을 둔다.</p> <p>제3조(구성)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 예술단체에는 단장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두며, 단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단원(이하 “객원출연자”라 한다)을 둘 수 있다.</p> <p>제4조(단원의 위촉)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p>
--	---

<p>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p> <p>제5조(보수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단원과 객원출연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 또는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술단체에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7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중에서 교향악단·합창단·소년소녀교향악단·소년소녀합창단·국악관현악단·가무단·무용단 및 오페라단의 단원위촉 등 운영에 관한 권한을 세종문화회관장에게 위임한다.</p> <p>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事項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할 수 있도록 많이 委任되었고, 또 現行 條例의 불합리한 規定 등을 現況에 맞도록 調整하는 것이 條例改正의 重要한 內容이 되겠습니다.</p> <p>금번 市長이 提出한 條例改正案은 全文 36條와 附則 7條로써 主要骨子는 用途地域 안의 建築基準의 緩和와 日照權 規定의 單純化, 그리고 道路幅에 의한 建築制限 基準緩和 및 基準未達地의 建築基準 緩和이며, 또 公開空地制度를 새로 導入하고 그간 江南北地域으로 차등화되었던 建蔽率과 容積率을 균일화 하면서 이를 緩和하는 것이 主要內容이었습니다.</p> <p>우리 委員會에서는 建築條例가 市民住居環境은 물론 쾌적한 都市空間을 確保하는데 미치는 重要性을 認定하고 이를 深度있게 審査토록 하기 위해서 條例를 專擔 審議할 수 있는 條例改正小委員會를 構成한 바 있습니다. 그간 小委員會에서는 執行部를 상대로 4 내지 5회에 걸친 基礎審議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지난 1993年 2月 17日에는 全市議員님과 關係公務員, 그리고 業務와 關聯된 職能團體의 代表들과 같이 大討論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審議會와 討論會를 통하여 얻어진 公同적인 意見을 收斂하여 지난 第60回 臨時會에서는 우리 都市整備委員會에서 修正案을 마련하여 議決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修正案 일부가 再審査할 必要가 있어 이번 第61回 臨時會 都市整備委員會에서 재차 審査한 結果 修正案의 일부를 翻案하여 翻案된 修正案을 採擇하기로 議決하였습니다.</p> <p>修正案의 主要內容은 改正案 本文 36條와 附則 7條를 本文 34條와 附則 9條로 整理하면서 첫째, 建築委員會의 委員長을 專門職인 住宅局長으로 바꾸고, 委員會의 機能을 具體的으로 明示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道路幅에 의한 建築規制에서 市場用地는 緩和하여 주도록 하였으며, 用途地域內의 建築許容基準을 구분하여 一般住居地域內에서는 간어도 制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保全綠地地域에서도 小型 宗教施設과 醫療施設을 許容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建築物의 內容에 따라 높</p>
<p><b>3. 서울特別市建築條例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b></p> <p style="text-align: right;">(16時 34分)</p> <p>○議長 金瓊會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建築條例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p> <p>(議事棒 3打)</p> <p>都市整備委員會 金錫浩議員 나오셔서 審査結果를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金錫浩議員 都市整備委員會所屬 金錫浩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연일 수고가 많으신 同僚議員 여러분, 本議員이 우리 都市整備委員會에서 審査한 서울特別市建築條例修正案에 대한 審査報告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p> <p>이번 建築條例의 改正은 建築法과 施行令이 全面 改正되어 종전의 法令으로 規制되었던</p>	<p>事項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할 수 있도록 많이 委任되었고, 또 現行 條例의 불합리한 規定 등을 現況에 맞도록 調整하는 것이 條例改正의 重要한 內容이 되겠습니다.</p> <p>금번 市長이 提出한 條例改正案은 全文 36條와 附則 7條로써 主要骨子는 用途地域 안의 建築基準의 緩和와 日照權 規定의 單純化, 그리고 道路幅에 의한 建築制限 基準緩和 및 基準未達地의 建築基準 緩和이며, 또 公開空地制度를 새로 導入하고 그간 江南北地域으로 차등화되었던 建蔽率과 容積率을 균일화 하면서 이를 緩和하는 것이 主要內容이었습니다.</p> <p>우리 委員會에서는 建築條例가 市民住居環境은 물론 쾌적한 都市空間을 確保하는데 미치는 重要性을 認定하고 이를 深度있게 審査토록 하기 위해서 條例를 專擔 審議할 수 있는 條例改正小委員會를 構成한 바 있습니다. 그간 小委員會에서는 執行部를 상대로 4 내지 5회에 걸친 基礎審議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지난 1993年 2月 17日에는 全市議員님과 關係公務員, 그리고 業務와 關聯된 職能團體의 代表들과 같이 大討論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審議會와 討論會를 통하여 얻어진 公同적인 意見을 收斂하여 지난 第60回 臨時會에서는 우리 都市整備委員會에서 修正案을 마련하여 議決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修正案 일부가 再審査할 必要가 있어 이번 第61回 臨時會 都市整備委員會에서 재차 審査한 結果 修正案의 일부를 翻案하여 翻案된 修正案을 採擇하기로 議決하였습니다.</p> <p>修正案의 主要內容은 改正案 本文 36條와 附則 7條를 本文 34條와 附則 9條로 整理하면서 첫째, 建築委員會의 委員長을 專門職인 住宅局長으로 바꾸고, 委員會의 機能을 具體的으로 明示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道路幅에 의한 建築規制에서 市場用地는 緩和하여 주도록 하였으며, 用途地域內의 建築許容基準을 구분하여 一般住居地域內에서는 간어도 制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保全綠地地域에서도 小型 宗教施設과 醫療施設을 許容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建築物의 內容에 따라 높</p>